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발췌

(법률 제 2482 호 1973. 2. 6 공포)

**제 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① 4층 이상의 건물.

②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제 3조(적용지역)** 이 법의 적용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조(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하 ‘특약부 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 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도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 12조(법인격)**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 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할인등급의 사정.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기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 16 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전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

을 수 없다.  
⑥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7 조(개선 건의)** 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⑥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대통령령 제13459호 1991. 9. 3 개정)

**제 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특수건물)** ① 법 제 2 조 제 3 호 나의 규정에 의한 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 3 조 제 1 호에 규정한 부동산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와 관련된 부속건물.

2.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규정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 3 조 2 항에 규정

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

4.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호 가목에 규정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

5. 공연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6. 영화 또는 텔레비전 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 및 방송시설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7. 옥내판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도 · 소매업진흥법 제 2 조 제 1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 규정된 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터로 사용하는 건물.

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 조 제 7 호 나목에 규정된 유통점업체 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 경우에 2종 이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경우의 그 연면적은 2 이상의 업종에 대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0. 교육법 제 81 조에 규정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것은 제외한다.

1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호에 규정된 아파트.



1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물.

13.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창고 및 주차 전용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기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 건물의 총수 계산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3조(적용 지역)**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 지역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전주시와 인구 50만인 이상의 시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로 한다.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2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1> 상해 구분 및 보험금액 요약

상해등급	보험금액	상해등급	보험금액	상해등급	보험금액	상해등급	보험금액
1	800만원	2	700만원	3	600만원	4	500만원
5	420만원	6	360만원	7	300만원	8	240만원
9	180만원	10	140만원	11	80만원	12	40만원

<별표2>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 요약

장해등급	보험금액	장해등급	보험금액	장해등급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1	1,000만원	2	900만원	3	800만원	4	700만원
5	600만원	6	500만원	7	400만원	8	300만원
9	250만원	10	200만원	11	150만원	12	100만원
13	70만원	14	40만원				

註 : 신체장애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보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관계인의 승락없이 일출전, 일몰후에 이를 실시할 수 없다.

⑤ 협회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0일내에 그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註 : 시행령 개정 이유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화재보험 의무가입의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화재로 인한 사망 및 부상시 지급하

는 보상금을 사망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4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새로이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후유장해 보상을 신설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췌

(재무부령 제1862호 1991. 10. 21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항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적용 지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라 함은 울산시·부천시·수원시 및 성남시를 말한다.

제2조(실손해액) 영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3조(협회비) ②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손해

보험회사가 출연할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한 특수건물에 대한 수입보험료에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방재 활동비를 기준 수입보험료(특수건물에 대한 전년도의 수입보험료에 과거 3년간의 평균증감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된 출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할 협회비를 업무계획 제출시에 함께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2의 개정 규

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註 : 시행규칙 개정 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991. 9. 3 대통령령 제13459호)으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의 적용 지역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전주시 외에 인구 50만인 이상의 시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가 추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울산시·부천시·수원시 및 성남시를 법의 적용 지역으로 하는 한편, 손해보험회사가 화재보험협회에 출연하는 협회비의 산출방법을 정하려는 것임.